



회 홍익법무법인

[별지 제 33호 서식]

전화: 779-2223~6
755-9145~8
공증: 752-4281

2026 년 등부 제 3660 호

인 증 서

공증인가 **홍 익 법 무 법 인**

발 기 인 총 회 의 사 록

2026년 7월 2일 오후 14:00 시 발기인 사무소 에서 발기인총회를 개최하다.

주식총수	300,000주	주주총수	1명
출석주주수	1명	이의주식수	300,000주

발기인 대표 주식회사 하이웨이교산의 사내이사 정미정은 상법 363조의 소정 소집절차의 단축 또는 생략에 동의하였음을 확인하고 상법 제30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정수에 달하는 발기인이 출석하여 본 총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회의 진행상 의장을 선임할 것을 구한바 발기인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발기인 대표를 의장으로 선임하였고 동인은 즉석에서 그 취임을 승낙하고 의장석에 등단하여 개회를 선언한 후 다음 의안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하다.

제1호 의 안 : 정관 승인의 건

의장은 정관을 낭독하고 축조 설명을 가한 후 그 여부를 자문한 즉 전원일치로 원안대로 승인하다.

제2호 의 안 : 사내이사 및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

의장은 사내이사 및 기타비상무이사 선임방법을 주주일동에게 자문한 즉 사내이사 1명 및 기타비상무이사 2명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고자 전원 일치되어 즉시 투표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선출되다

사 내 이 사 정 재 영(1988년 04월 21일 생)

기타비상무이사 김 승 현(1964년 03월 15일 생)

기타비상무이사 박 재 우(1961년 10월 31일 생)

위 피선임자들은 즉석에서 그 취임을 승낙하다.

제2호 의 안 : 감사 선임의 건

의장은 감사 선임방법을 주주일동에게 자문한 즉 감사 1명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고자 전원일치되어 즉시 투표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선

출되다.

(단, 감사의 선임에는 상법 제40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감 사 김 태 하(1976년 01월 18일 생)

위 피선임자들은 즉석에서 그 취임을 승낙한다.

제4호 의 안 : 대표이사 선임의 건

의장은 정관 제35조에 따라 대표이사 선임방법을 주주일동에게 자문한 즉 대표이사 1명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고자 전원일치되어 즉시 투표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선출되다.

대표이사 정 재 영(1988년 04월 21일 생)

위 피선임자들은 즉석에서 그 취임을 승낙한다.

제5호 의 안 : 대표이사보수 결정의 건

의장은 정관 제39조 규정에 의거 이사의 보수를 월250만원으로 책정함을 설명하고 그 승인을 구한바 전원일치로 원안대로 승인한다.

제6호 의 안 : 이사보수 결정의 건

의장은 정관 제39조 규정에 의거 이사의 보수를 무보수로 책정함을 설명하고 그 승인을 구한바 전원일치로 원안대로 승인한다.

제7호 의 안 : 감사보수 결정의 건

의장은 정관 제39조 규정에 의거 감사의 보수를 최초 사업년도에는 월50만원으로 책정함을 설명하고 그 승인을 구한바 전원일치로 원안대로 승인한다.

제8호 의 안 : 상법 제 298 조 소정 사항 조사보고의 건

의장은 발기인이 아닌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정재영, 기타비상무이사 김승현, 박재우, 감사 김태하로 하여금 상법 제298조 소정사항을 조사 보고케 하기 위하여 휴회한다고 선언한 다음 잠시 후 속회를 선언한다.

조사보고자는 이사 및 감사를 대표하여 별첨 조사보고서와 같이 상법 제 298조 소정사항의 조사결과를 상세히 보고한즉, 전원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그를 승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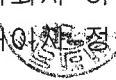
이상으로 금일 총회의 목적인 의안 전부를 심의 종료하였으므로 의장은 폐회를 선언하다. (회의 종료시간 14:30)

위 의사의 경과요령 및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발기인이 다음과 같이 기명 날인한다.

2026년 7월 2일

주식회사 하남교산대한대토제74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의장 겸 발기인 주식회사 하이웨이교산 (135711-0024758)
사내이사 정미정 (인)





등부	2026년	제 3660 호
인 증		
위 주식회사 하남교산대한대토제74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의		
2026년 7월 2일자 발기인 총회 의사록 에 대하여		
의장 겸 발기인 주식회사 하이웨이교산 사내이사 정미정 의 대리인 하 상 우 는		

본 공증인의 면전에서 위 의사록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고 진술하고,		
위 의사록의 기명 날인 이 각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였다.		
본 공증인은 위 진술과 아래 기재 자료에 의하여 위 의사록에 기재된		
그 결의의 절차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함을 확인하였다.		
2026년 7월 3일 이 사무소에서 위 인증한다.		
공증사무소 명칭	공증인가 홍 익 법 무 법 인	
소 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재지표시	서울 중구 서소문로 103, 402호 (서소문동, 배재빌딩)	
공 증 인	공증담당변호사	이 준
아 래		
1. 진술서		
2. 확인서		
3. 발기인명부		
4. 법인등기부등본		
5. 정관사본		
6. 운전면허증		
7. 위임장		
8. 인감증명서		